

의안번호	2211297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5.7.31.
추계번호	25B3469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. “기상산업”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·공급하거나 기상조절기술의 제공 등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함 1의2. “기상조절기술”이란 인공강우(人工降雨), 대기조성(大氣組成) 조절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 및 기상현상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함 7의2. “기상조절기술업”이란 기상조절기술을 사용하여 「기상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기상재난의 예방과 수자원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·제공하는 사업을 말함	의무규정
2	안 제4조 (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2의2.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조 (정의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조 (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—	• 미대상 -기상청에 따르면, 현재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기상산업의 정의에 기상조절기술의 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산

업을 포함하고, 기상조절기술 및 기상조절기술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임

□ 개정안에 따라 기상산업의 정의에 인공강우(人工降雨), 대기조성(大氣組成) 조절 등 기상조절기술 관련 산업이 포함될 경우, 「기상산업진흥법」에 따른 기상산업 진흥시책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행 「기상산업진흥법」은 기상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(제2조), 기상청장이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·개발의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(제4조), 해외 진출 지원(제11조의2)등 기상산업에 대한 진흥시책을 규정하고 있음

○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「기상산업 활성화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기상청에 따르면,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상조절기술 관련 산업 및 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,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
－ 참고로, 「기상산업 활성화」 사업은 기상산업 시장 조사·분석 및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기상산업육성 사업과 기상기업의 창업·성장·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상기업지원 사업 등의 내역사업을 포함하며, 동 사업의 예산은 2025년 기준 147억 5,300만원임

□ 다만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기상산업 진흥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